

「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재우 의원 외 1인

2. 찬 성 자 : 김정미 의원 외 4인

3. 제안이유

-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통리장의 노고에 보답하고, 사기 진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통리장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 신설(안 제6조)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, 「공직선거법」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통리장의 사기 진작과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통리장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처우 개선을 위해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, 통·리장의 역할과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됨.
- 다만, 특정 단체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은 타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및 매년 약 1억원의 시비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, 재정 부담과 주민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.